

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남창진의원 (대표)발의)

의안 번호	1078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6년 3월 29일

발 의 자 : 남창진 의원(1명)

찬 성 자 : 남재경, 우창윤, 주찬식, 박성숙,
강구덕, 이숙자, 김제리, 성중기,
진두생, 박중화 의원(10명)

1. 제안이유

「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」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규정되어 있는 “주거약자”에 대한 정의를 개정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“사회경제적 약자”의 정의 중 “주거약자”의 정의를 개정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,
「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」

나. 예산조치 : 없음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나. 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주거약자

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.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의 임대주택 중 국가·서울특별시·에스에이치(SH)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한 임대주택 거주자

라.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이 소유하는 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있는 자

제2조제2호다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목 중 “그 밖에”를 삭제한다.

제2조제2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바.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(생략)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(생략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(생략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나. <u>서울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주거약자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padding-right: 20px;">〈신설〉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다. <u>그 밖에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적절한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청년1인가구 등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padding-right: 20px;">〈신설〉</p> <p>3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나. <u>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주거약자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다. <u>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의 임대주택 중 국가·서울특별시·에스에이치(SH)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한 임대주택 거주자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라. <u>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이 소유하는 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있는 자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마. <u>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적절한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청년1인가구 등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바. <u>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</u>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: 비용발생요인 없음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2호

3. 미첨부 사유

- 이 조례의 “정의” 규정 중 관련 조례를 근거로 규정되어 있는 “주거약자”에 대한 정의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되지 않음

4. 작성자

- 서울특별시의원 남 창 진